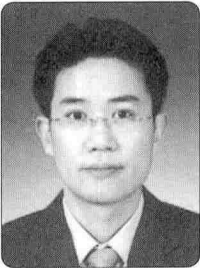


기획특집 [2]

국내 친환경 축산의 현황 및 과제



박일수 차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관리팀

1. 서론

소득증가와 더불어 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소비형태도 양 위주에서 질 위주의 고품질 기능성 안전 축산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증가와 웰빙 바람으로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은 '06년 기준 112만톤이 생산되어 전체생산물의 약 6.2%를 점유하였으며, 전년 대비 생산량이 약 40% 증가하였다.

친환경축산물은 친환경농산물과 비교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07. 3. 28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를 신규로 도입함으로써 향후 친환경축산물의 생산량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친환경축산물 이란

1)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 도입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은 1970년대 자연환경의 보전 차원으로 농가 스스로 자영형태로 존재하다가 우리나라 농업을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육성하여 국민들의 안전농산물 욕구에 부응하고,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농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농업정책의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1998. 12. 14 시행), 2001년 1월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개정(2001. 7. 1 시행)하여 본격적인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을 수립하였다.

친환경축산물의 인증기준은 2001년 제24차 WTO와 FAO산하의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서 유기가축분야에 대한 일반원칙과 사육·관리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유기축산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되었으며, 2001년 7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기축산물 및 전환기축산물의 인증기준이 마련되었다.

유기축산물의 인증은 '03~'05년 동안 농협중앙회 안성목장에서 유기축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05년 5월 최초 인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시작되었다.

또한, 국내 여건상 유기축산물의 생산량 확대의 한계와 항생제의 오남용 방지 등 친환경축산에 대한 축산농가의 진입 완화를 위하여 2007. 3. 28일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를 신설하였다.

2) 친환경축산물 인증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축산물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

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된 안전한 축산물을 말한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로 분류되며, 사육장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 기반, 가축의 선택·번식방법 및 입식, 전환기간,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등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유기·무항생제축산물 각각의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교부한다.

3. 친환경축산의 현황

1) 친환경축산 인증현황

- 국내 친환경축산물 인증실적은 '05년부터 인증이 시작되어 '07년 6월 현재 131건(유기축산물 53건, 무항생제축산물 78건) 인증
 - 인증대상 축종별로 한·육우가 19건, 젓소 5건, 돼지 6건, 산란계 76건, 육계 20건, 산양 4건, 사슴 1건 으로 양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인증건수 : ('05) 18건 → ('06) 58 (증 222%) → ('07. 6 현재) 131
 - 인증물량 : ('05) 256톤 → ('06) 1,869 (증 630%) → ('07. 6 현재) 1,706

인증 분류		축 종							계
유기	무항생제	한·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산양	사슴	
53	78	19	5	6	76	20	4	1	131

2) 인증기관 지정현황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인증은 정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을 중심으로 농관원이 지정한 친환경전문인증기관 37개소 중 31개 기관에서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에

서는 정책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의 민간기관 이관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전문인증기관은 전문인증회사, 대학, 영농조합법인, 사단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인증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인증기관별 친환경축산물 인증현황>

인증기관	유기	무항생제	계
농관원	26	65	91
(사)흙살림	1	-	1
(유)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13	1	14
건국대학교	-	3	3
국립순천대학교	-	1	1
글로벌유농인 영농조합법인	5	3	8
농협중앙회	3	2	5
오씨케이㈜	4	2	6
천안연암대학	-	1	1
한경대학교	1	-	1
민간 계	27	13	40
합계	53	78	131

3) 유기배합사료 수급현황

○ 국내 유기배합사료는 '06년 기준 3개 제

조업체와 1개 수입업체가 제조·수입하여 유통되고 있다.

(단위: 톤)

구분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합계
'05	761	102	302	438	1,603
'06	2,000	1,056	300	2,000	5,356

4) 친환경축산물의 인증기준

친환경축산물의 인증기준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6의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과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이 고시(제 2007-5호)한 친환경축산물 인증 부가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주요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분야	관행 축산	친환경 축산
시설/환경	축사면적	• 밀집사육가능	• 축종별 사육밀도 기준 준수
	축사바닥	• 톱바닥, 시멘트바닥, 깔짚 등 다량(규정 없음)	• 부드럽고, 미끄럽지 않은 구조(유기)
	분뇨관리·처리	• 정화·자원화 방법 • 축사면적에 준한 처리시설 규정 (축산관련법 및 오분법에 준함)	• 자원화를 근간으로 한 처리 방법 • 축산관련 및 오분법 준함 •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
	축사시설	• 제한사육 가능 • 계류사육 가능	• 자유로운 행동 표출 및 운동이 가능해야 함 • 군사원칙(유기) • 가금의 경우 헛대, 산란상자 마련(유기) • 자유급이 시설 마련(유기)
	방목지/운동장시설	• 규정사항 없음	• 돼지, 양계 권장사항, 단, 초식가축의 경우 축사면적의 2배수준(유기)
가축관리	전환기간	• 해당사항 없음	• 축종별 전환기간 준수
	가축번식	• 규정사항 없음	•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 권장 • 인공수정 허용 • 번식호르몬처리 허용 안됨 • 수정란 이식 허용 안됨(유기) • 유전공학기법 허용 안됨(유기)
	사료/영양	• 비유기 사료 급여 허용 • GMO사료원료 사용가능 • 항생제 허용 • 성장촉진제 허용 • 호르몬제 허용	• 유기사료급여 80% 이상(유기) • 유전자조작 변형물질 허용 안됨(유기) • 항생·항균제, 성장촉진, 호르몬제 허용 안됨
	질병관리	• 구충제 사용 허용 • 예방백신 사용 허용 •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사용 허용	• 구충제 사용 허용 • 예방백신 사용 허용 • 대중요법을 이용한 환축치료 권장 • 정기적 약품투여 허용 안됨(환축의 경우 수의사 처방에 의한 약품투여를 허용하되,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 친환경축산물로 인정) • 성장촉진제·호르몬제 허용 안됨(단, 호르몬의 치료목적 사용은 수의사 관리하에 허용)
	사양관리	• 밀집사육 허용 • 격리사육 허용 • Cage사육 허용 • 거세 등 동물에 가해지는 물리적 행위에 대한 제한사항 없음	• 물리적 거세 허용 • 꼬리·귀·부리·뿔자르기 등 허용 • 밀집사육 허용 안됨 • 군사원칙(임신말기·포유기간 예외) • Cage사육 허용 안됨(유기) 단, 자돈 제외 • 산란계의 경우 인공광 최대사용 14시간 기준(유기)

4. 친환경 축산의 과제

1) 유기사료 및 무항생제 사료의 원활한 공급

유기축산물의 인증을 위한 구비요건은 사육장 및 사육조건, 가축의 선택·번식방법 및 입식, 전환기간,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등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유기사료의 확보는 유기축산물 인증 및 생산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유기사료”라 함은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생산된 사료[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수입된 사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중국, 호주 등의 국가와 같은 넓은 경작지에서의 대단위 유기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국가와 비교할 때, 대부분의 유기사료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내 유기사료의 수급문제는 유기축산물 생산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 된다.

이러한 유기사료 확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기사료의 자급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유기농 부산물을 사료로 최대한 이용하여 유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유기사료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산야초 등을 이용하는 방안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과 연계한 유기농산물 담리작으로 추파 사료작

물을 유기재배 하는 농가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사업비 지원 대상자중 유기축산 농가 및 전환농가를 우선 선정하고, 유기적 재배에 따른 사료 생산량 저하의 일부를 보조비를 상향을 통해 보전한다면, 유기사료의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축산농가는 경종농가에 유기비료를 공급하고 유기농산물 재배농가와 같은 경농농가는 축산농가에 유기농산물 부산물을 유기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체계적으로 유기농 부산물을 사료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 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서 무항생제사료를 급여하여야 한다. “무항생제사료”라 함은 사료에 항생·항균제, 호르몬제 등 동물용의약품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적합하게 생산된 사료를 말한다.

무항생제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의 조건은 유기사료와 비교했을때 상대적으로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쉬운 반면, '07년 3월 신설된 제도라 사료관리법에 의한 유기배합사료 성분등록과 같은 규정이 없어 무항생제 배합사료를 심사하는데 있어 항생물질 등의 분석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향후, 무항생제배합사료 성분등록과 같은 규정이 마련되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위한 심사를 더욱 간소화 시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분석비용 절감 및 무항생제배합사료의 원활한 공

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친환경축산물의 가격 경쟁력 확보

친환경축산물의 생산은 친환경성, 안전성을 극대화 시킨 축산물 생산방법이긴 하지만, 높은 생산비를 지불해야 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유기적 재배방법으로 옥수수를 생산할 경우 약 40~50%의 수확량 감소가 있어 사료비가 일반 축산에 비해 약 2배 수준이고, 축사면적당 사육두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축사 면적을 확대하거나 사육두수를 감소시키게 되며, 동물용의약품 사용제한으로 가축질병 발생 시 막대한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등 생산비가 일반축산에 비하여 높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축산물 생산비 상승은 추후 생산물 판매가격을 높게 수취함으로써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또한 100% 보장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감축하는 생산체계 도입이 필요하며,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지불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직접지불의 방법으로는 친환경축산 시행초기 사료비 부담과 시행착오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친환경축산으로 전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친환경축산 인증 농가에 대하여 친환경 축산직불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에 직불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가격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최근 한미 FTA체결, 그리고 향후 유럽, 중국 등 제3국과의 FTA가 계속 체결될 경우 국제적인 축산물 거래가 자유로워지고 유통구조의 혁신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주에서도 신선한 상태로 축산물 수입이 가능해짐으로써 수입 축산물과의 무한경쟁이 시작된다면, 소비자에게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를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는 이러한 차별성을 부여하는 가장 확실한 생산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조기 정착시키기 위하여 축산농가는 인증기준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인증기관에서는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다. ㉟